

2024.04.24.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무관리

1.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유급휴일”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는 없으면서 통상 1일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
- ✓ 근로자의 날은 개근여부와 상관 없이 부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특정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므로 다른 휴일과 달리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됨

3.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노무관리

(1)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 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한다면, 휴일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 휴일근로수당 및 2) 보상휴가에 대해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 1) 휴일근로수당 (*8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지급하거나,
- 2)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 참고. 가산수당 포함한 임금 지급에 갈음한 동등한 가치의 휴가 부여)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109조)

(2)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가 불가능하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	보상휴가
원래 근무예정일과 휴일을 맞바꾼 것	연장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
대체하여 휴일근로 하더라도 가산임금 반영X	가산수당을 갈음한 보상휴가를 지급함 예) 1시간 근로 시 1.5시간 휴가 부여

4. 근로형태별 근로자의 날 노무관리

일급제 시급제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 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 150%를 추가지급 하여야 합니다. 즉, 임금의 2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848)
월급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100%)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100%와 휴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 및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50%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848)
교대제	•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304) • 다만, ‘근로자의 날’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기 68207-402) 예1) 4/30 22:00 ~ 5/1 8:00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x (야간수당 별도) 예2) 5/1 22:00~5/2 8:00 근무 시 전체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O (야간수당 별도)
일용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적용은 제외하지만,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36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길 65, B동 907호(갈현동, 상상자이타워)

주차 : 해당건물 B1~B4층 주차장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나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버스 (과천지식정보타운 정류소에서 도보15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2-6949-1227**
팩스 02-6949-1678

양재모 대표 공인노무사
cpla21@hrhanalaw.com

김재언 공인노무사
cplaeony@hrhanalaw.com

황금별 공인노무사
gold@hrhanalaw.com

이정빈 공인노무사
cplabin@hrhanalaw.com

이지은 공인노무사
wsl12@hrhanalaw.com